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의 치기공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8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8”로 한다.
- 같은조 호텔관광서비스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2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2”로 한다.
- 같은조 외식조리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8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8”로 한다.
- 같은조 미용피부화장품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4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4”로 한다.
- 같은조 합계 입학정원 야간 “280”을 “262”로 하고, 계 “280”을 “262”로 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 분	내 용					
현행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
	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
			주	야	계	
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
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
	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유아교육학과	인문사회		20	20	1
	<u>치기공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1
	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	인문사회		<u>20</u>	<u>20</u>	2
	방사선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식품영양학과	자연과학		20	20	2
	<u>외식조리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2
	<u>미용피부화장품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2
	임상병리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의무행정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합 계			<u>280</u>	<u>280</u>	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정(안)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</th> <th rowspan="2">대계열분류</th> <th colspan="3">입 학 정 원</th> <th rowspan="2">수업연한</th> </tr> <tr> <th>주</th> <th>야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회복지학과</td> <td>인문사회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물리치료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40</td> <td>4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간호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치위생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유아교육학과</td> <td>인문사회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u>치기공학과</u>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<u>18</u></td> <td><u>18</u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</td> <td>인문사회</td> <td></td> <td><u>12</u></td> <td><u>12</u>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방사선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식품영양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<u>외식조리학과</u>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<u>18</u></td> <td><u>18</u>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<u>미용피부회장품학과</u>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<u>14</u></td> <td><u>14</u>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임상병리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의무행정학과</td> <td>자연과학</td> <td>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</td><td><u>262</u></td><td><u>262</u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	주	야	계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	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	유아교육학과	인문사회		20	20	1	<u>치기공학과</u>	자연과학		<u>18</u>	<u>18</u>	1	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	인문사회		<u>12</u>	<u>12</u>	2	방사선학과	자연과학		20	20	1	식품영양학과	자연과학		20	20	2	<u>외식조리학과</u>	자연과학		<u>18</u>	<u>18</u>	2	<u>미용피부회장품학과</u>	자연과학		<u>14</u>	<u>14</u>	2	임상병리학과	자연과학		20	20	1	의무행정학과	자연과학		20	20	1	합 계			<u>262</u>	<u>262</u>
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	야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아교육학과	인문사회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치기공학과</u>	자연과학		<u>18</u>	<u>18</u>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	인문사회		<u>12</u>	<u>12</u>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사선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식품영양학과	자연과학		20	20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외식조리학과</u>	자연과학		<u>18</u>	<u>18</u>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미용피부회장품학과</u>	자연과학		<u>14</u>	<u>14</u>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상병리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무행정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	<u>262</u>	<u>26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.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제1호 가목의 “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하며”를 “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학과의 장 또는 조교수 이상의 담당교수로 하며”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나목의 “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”를 “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며, 실험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”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다목 4)의 “연구활동종사자의”를 “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관한”으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“6)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“6)”을 “7)”로 이동한다.
- 제12조(교육 및 훈련) 제1호 나목의 “3시간”을 “1.5시간”으로 한다.
- 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가목의 “영 제9조 제1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대상 근로자 나목의 “영 제9조제1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내용의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”을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제2호 교육대상 근로자 가목의 “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”을 “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의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대상 근로자 나목의 “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”을 “제11조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내용의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”을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”으로 하고, “연구개발 활동”을 “연구활동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제3호 교육내용의 “연구개발 활동”을 “연구활동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의 “반기의”를 “반기 또는 연도의”로 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와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와 같다. 1. 학과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	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(안)
<p>가. 각 학과 실험실의 <u>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하며</u>, 학과 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실험실의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에서 <u>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</u></p> <p>다.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실험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)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3) 실험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) <u>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</u> 5)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<p><신 설></p> <p>6)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</p> <p>2.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</p> <p>가.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별로 실험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의 2인을 둔다. 정은 해당 실험실의 담당(지도) 교수가 되며, 부는 조교 중에서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.</p>	<p>가. 각 학과 실험실의 <u>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 학과의 장 또는 조교수 이상의 담당교수로 하며</u>, 학과 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에서 <u>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며, 실험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</u>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<u>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) (현행과 같음)</p> <p>6) <u>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7)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교육 및 훈련)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[별표1]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 <p>가. 교육훈련은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, 조교수 이상 또는 안전 전문강사가 담당</p> <p>나. 교육과정은 신규채용(신입생) 시 2시간 이상, 정기교육(신입생 및 재학생)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을 소유한 학과는 학기별 6시간 이상, 그 밖의 학과는 학기별 3시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p> <p>다. 신규교육을 받은 신입생은 해당년도 1학기 정기교육을 면제한다.</p> 	<p>제12조(교육 및 훈련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교육과정은 신규채용(신입생) 시 2시간 이상, 정기교육(신입생 및 재학생)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을 소유한 학과는 학기별 6시간 이상, 그 밖의 학과는 학기별 <u>1.5시간</u>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2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실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신규교육(지정된 후 6개월 이내)은 18시간 이상, 보수교육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)은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.</p> <p>3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이수 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</p>	2. ~ 3.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 분	내 용				
현행	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				
	교육과정	교육대상		교육시간	교육내용
현행	1. 신규 교육 ·훈련	근로자 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•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	
	근로자가 아닌 자	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하는 연구활동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	

구 분	내 용				
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	
현행	2. 정기 교육 ·훈련	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<u>근무하는</u> 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안전한 <u>연구개발</u> 활동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	
		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<u>아닌</u> 연구실에 <u>근무하는</u> 연구 활동종사자	반기별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안전한 <u>연구개발</u> 활동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	
	3. 특별안전교육 ·훈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 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 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안전한 <u>연구개발</u> 활동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	
비고					
<p>1. 제1호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</p> <p>2.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·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<u>반기</u>의 정기 교육·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3. 제2호의 정기 교육·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.</p>					
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					
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	
개정(안)	1. 신규 교육 ·훈련	근로자	가. <u>제11조</u> 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<u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</u>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•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		근로자가 아닌 자	나. <u>제11조</u> 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<u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</u>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안전한 <u>연구활동</u>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	2. 정기 교육 ·훈련	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<u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</u>에 관한 사항 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안전한 <u>연구활동</u>에 관한 사항 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	
비고					
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·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<u>반기</u> 또는 <u>연도의</u> 정기 교육·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				